

1. 개정이유

리튬배터리는 운송 중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항공운송을 꺼리는 추세이나, 우리나라 리튬배터리 생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한 리튬배터리를 운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아울러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운송승인 전 **제출서류**와 생산공장, 포장상태 등에 대한 **현장점검**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수송을 지원하기 위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승인 전 위험물 운송기준 적합성 판단을 위한 항공위험물감독관의 확인 절차 근거 마련(안 제63조의2 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항공안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내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및 항공운송사업자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항공위험물감독관은 제65조 별표 1의 특별조항 A88, A99에 따른 리튬배터리의 항공운송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을 위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의2(리튬배터리)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3조의2(리튬배터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항공위험물감독관은 제65조 별표 1의 특별조항 A88, A99에 따른 리튬배터리의 항공운송승 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 을 위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하 여야 한다.</u>